

1992년 에너지 절약추진 강화방안

이자료는 지난 12월 2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열린
에너지 절약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李 福 載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정책연구팀장〉

I. 에너지절약추진 강화의 필요성

○ 總에너지 절약실적

- 80년대 중반이후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율을 상회함에 따라, 에너지/GNP 비율은 감소추세에서 증가추세로 반전. 그 결과 에너지 소비의 GNP 탄성치가 '1'을 초과하는 에너지 소비과열현상을 초래
-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0년 기준 88% 수준이며, '92년에는 9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 결과 에너지 수입액은 총 수입액의 18%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 국제수지적자 확대에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92년 전력수요 전망 및 공급능력

- '92년 전력공급 능력은 분당, 안양, 평택 등의 신도시

열병합 발전소와 LNG 복합 화력발전소 준공을 감안 23,017MW인바, 동년의 최대 전력수요는 '91년대비 11.5% 증가한 21,283MW로 전망됨.

- '92년의 전력공급 예비율은 적정수준 15%에 못미치는 8.1% 수준에 불과하여 수급불안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92년 전력공급능력 및 수요예측

| | |
|--------|----------|
| 발전설비용량 | 23,621MW |
| 공급 능력 | 23,017MW |
| 최대 수요 | 21,283MW |
| 예비력 | 1,734MW |
| 예비율 | 8.1% |

에너지소비의 GNP 탄성치

| | 1981~'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
| GNP 성장률(%) | 9.8 | 12.9 | 12.4 | 6.8 | 9.0 | 8.6 | 8.0 |
| 1차 에너지소비증가율(%) | 6.1 | 10.4 | 11.0 | 8.4 | 14.1 | 11.6 | 10.3 |
| 에너지소비의 GNP 탄성치 | 0.6 | 0.8 | 0.9 | 1.2 | 1.6 | 1.3 | 1.3 |

* 추정치

주요 에너지 지표

|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
| 에너지/GNP 비율 (TOE/85년 백만원) | 0.697 | 0.681 | 0.673 | 0.683 | 0.715 | 0.735 | 0.750 |
| 에너지 수입의존도(%) | 78.2 | 80.0 | 83.2 | 85.5 | 87.9 | 90.3 | 92.1 |
| 에너지 수입액(억달러) | 46 | 56 | 55 | 72 | 107 | 130 | 160 |
| 총 수입액(억달러) | 297 | 386 | 482 | 568 | 651 | 768 | 872 |
| 에너지수입/총수입(%) | 15.4 | 14.5 | 11.4 | 12.6 | 16.5 | 16.9 | 18.4 |

* 추정치

○에너지절약 투자현황

-에너지절약 증대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에너지절약

투자의 경우, 투자우선순위에 있어 신제품 생산 및 설비확장 投資에 밀려 극히 부진한 실정임.

동기별 설비투자 비중 추이(전산업)

(단위: %)

|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
| 신 제품 생산 | 14.9 | 17.7 | 15.8 | 10.8 | 15.9 | 18.5 | 23.0 |
| 설비 확장 | 61.6 | 60.7 | 65.1 | 67.3 | 61.3 | 52.7 | 50.4 |
| 설비유지·보수 | 8.9 | 8.9 | 6.8 | 7.7 | 6.9 | 7.7 | 8.3 |
| 자동화·성력화 | 3.6 | 2.8 | 2.5 | 2.6 | 3.8 | 5.5 | 4.9 |
| 에너지절약 | 2.7 | 2.6 | 1.9 | 1.7 | 1.8 | 1.2 | 1.0 |
| 연구개발 | 2.7 | 3.0 | 2.7 | 2.5 | 3.4 | 3.1 | 3.4 |
| 기타 | 5.7 | 5.1 | 5.3 | 7.3 | 7.0 | 11.3 | 9.0 |
| 합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각년호

-산업부문의 경우 신제품 생산 및 설비확장 등 설비능력 증가를 위한 투자액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반면, 에너지절약 투자액 비중은 1~2% 수준에 불과하며, 그것도 감소추세에 있음.

○에너지 절약시책 강화의 필요성

-에너지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90% 정도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경제성장율을 상회하여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제수지 적자확대에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대구나 전력공급 능력의 단기간 확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가전제품 보급 확대에 특히 하절기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금년과 같은 전력수급 불안이 '92년 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반하여 에너지절약 증대에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 투자는, 절약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저조한 실정임.

-대기오염물질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부산물로서 에너

지 이용효율의 향상은 오염물질방출량의 감소를 가져오기도 함.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92년도 에너지 절약율 10% 이상 증대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및 외국의 절약정책을 비교·검토한 후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현행 에너지절약 시책

1. 국내

가. 가격정책

(1) 전력

○최대부하 억제 및 부하 평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간대별 또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

(2) 석유·가스

○석유제품의 경우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 소비절약을 유도

| 전력요금제도 | 개요 | 대상 | 요금 |
|---------------------|--|--------------------------------------|---|
|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 첨두부하를 심야시간으로 이동 유도 | 300kW 이상 산업용 | 하계 피크시간 요금수준을 타계절 수준보다 37.9% 상향조정, 야침시간대 45% 인하 |
| 계절별 차등요금제 | 하계 최대수요 억제로 부하 평준화 | 업무용 및 산업용 | 하계(6~8월)는 타계절보다 약 30~50% 고율 적용 |
| 심야 전력요금제 | 축열·축냉 방식에 의해 주간 부하를 심야시간으로 이전 또는 심야 부하 창출 유도 | 축열·축냉식 기기 또는 설비 | 주택용의 1/3 수준 또는 업무용의 절반수준 |
| 여름철 휴가, 보수기간 조정 요금제 | 피크발생 예상시간에 일시 휴가 또는 공장보수 유도로 최대 수요 감축 | 500kW 이상 수용가 | 1일 시행시 3일분의 기본요금 감액 |
| 전력수급 조정 요금제 | 피크발생 예상시 전력회사의 요청에 따라 전력 사용조정 | 5,000kW 이상 희망 수용가, 조정량 500kW 이상이면 적용 | 1일 시행시 5일분의 기본요금 감액 |

| | 1991년 현재 | 1992년 계획 |
|-------|----------|----------|
| 보통회발유 | 120% | 150% |
| 무연회발유 | 100% | 130% |
| 경 유 | 9% | 20~30% |
| L P G | 8% | |

나. 규제정책

- 에너지 시설은 대부분 高價의 내구재이기 때문에 시설의 구입 또는 설치 이전에 당시의 가장 효율이 우수한 시설이 선택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는 해당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전적 조치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금년에 입법화된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제도가 있으며, 나머지 규제조치

의 대부분은 에너지 사용시설의 사후적 효율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현행 규제시책의 문제점

-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 일정 규모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토록 明文文化 되어 있으나, 절약계획서의 평가·심사 및 사후 처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 단열시공 : 건물전체의 에너지소비 상한에 대한 기준, 즉 성능기준으로 건물 에너지소비효율을 규제하는 체계적인 추세의는 달리 우리는 아직도 단열재 두께 등 부위별 기준에 의존하는 실정임. 더구나 사무용 건물의 경우 단열재 두께 기준도 의무조항이 아닌 권장조항으로 추진되고 있음.

규 제 정 책

| 제 도 | 내 용 | 비 고 |
|-----------------------|--|---------------------------|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 일정규모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동력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 1991년 입법화 |
| 에너지 관리대상자 지정 | 일정 기준량 이상의 에너지사용자를 에너지관리 대상자로 지정,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 -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 당해년도 에너지사용 예정량 및 제품생산예정량 - 에너지사용 기자재의 현황 | |
| 목표 원단위 설정 및 제출 | 에너지사용자가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목표원단위)를 정하여 제출토록 하고, 동력자원부장관은 이의 이행을 명령. | |
| 에너지 사용기자재 소비 효율 기준 제정 | 에너지다소비 기자재의 목표소비효율 및 최저소비효율은 제정·고시 - 최저 소비효율 기준 미달 제품의 경우 판매 및 판매 목적의 진열 금지 | 차량 포함 |
|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고, 그 결과, 즉 소비효율, 에너지 사용량, 혹은 등급을 표시해야 함. | |
|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 건축허가 신청시 당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 |
| 단열시공 | 주택 해당부위별 열관류율의 수치를 기준치 이하의 구조로 하거나, 단열재 두께를 기준치 이상인 구조로 시공할 것. | 사무용건물의 경우 의무 조항이 아닌 권장조항임 |

다. 지원정책

- 금융지원정책
석유사업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 기금 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하고자하는 자에게 장기 저리의 투자자금을 융자
- 세제지원정책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완료한 자에게 투자자금의 일정부분을 법인세에서 감면시켜 주거나 가속상각을 인정

-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은 시설투자자의 투자자금 조달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 절약투자를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함. 그러나, 금융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사업기금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여서 향후 기금확보가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됨.

라. 에너지기술 개발

-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동력자원부, 과학기술처 등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바, 예산편성의 硬直

性으로 인하여 과제 선정에 제약을 받을 뿐만아니라 재원도 충분치 못한 실정임.

-기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부진으로 외국으로 부터의 기술도입에 주로 의존.

-실용화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는 개발된 기술의 에너지 절약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즉 신뢰감 부족, 그리고 실용화를 위한 투자재원 및 지원제도 부족이 지적됨.

다. 정보확산·교육

- 매스컴 활용 및 에너지절약 상설관 운영 그리고 에너지관리자 교육등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에 관한 정보확산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이지 못하고, 또한 정보의 광범위한 보급 확산에는 미흡함.

2. 해외

가. 규제정책

- EC 국가들은 절약프로그램으로 신규주택에 더욱 강화된 에너지 효율규제를 통해 고효율 보일러의 보급을 유도함.
- 美國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빌딩 건축에 필요한 구조, 재료, 부속물 및 설비기기의 특성이 계획서에 명기되어야 함. 또한 특정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기준을 설정하여 검사, 보증, 시행에 적용하고 있음.
- 日本의 경우 지역별, 건물부위별 열관류율 및 단열재 두께로 단열기준을 명시함과 동시에 우량 단열재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형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가이드로 지침서를 개발하여 시행함.
- 英國은 전기사용기기등 냉장고와 냉동기에만 우선적으로 효율 인증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음.
- 西獨은 신규빌딩 건축에 있어서의 단열기준을 강화시킴.
- 캐나다는 자동차 연비향상을 위하여 단계별 연비개선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나. 지원정책

- 기존기술의 개선 및 신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해 에너지절약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 강화가 필요함.
- 또한 소비자가 고효율기기를 구입할 경우 제품 구입가격의 일부를 환급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고효율 기기 보급확대에 이바지 하게 됨.
- 네덜란드 정부는 소비자에게 에너지절약에 필요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원금을支給하는바, 이 지원금은 정부와 유통회사들에 의해 지급되며, 그 재원은 에너지 소비에 대한 0.5%~2% 부과금을 기금으로 마련한 것임.
- 英國은 에너지절약기업을 통해 더 효율적인 난방 및 조명 기구에 대한 투자 및 운영을 하고 비용절약분을 분할하여 그들의 투자비 회수 및 운영비를 보상 받음. 또한 열병합

발전, 열회수 프로젝트 등에 관한 기술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함.

- 日本은 가정부문에 있어 단열재의 설치, 고효율 난방기기 및 급탕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금융지원 함.
- 美國은 특정 고효율 에너지사용기기(예, 에어컨, 냉장고, 냉동기, 고효율 모터, 高效率 螢光燈) 구입시 소비자에게 전력회사가 구입가격의 일부를 지불하고 있음.
- 西獨은 열병합발전소 및 지역난방을 위한 투자에 대하여 투자비의 35%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15% 이상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 대한 이자를 보조해 주고 있음.

III. 에너지 절약추진 강화방안

1. 가격정책

가. 전력

- 전기요금수준 상향조정
 - 장기 한계비용 수준의 전기요금이 책정되어야 절약을 위한 필요조건이 충족되는바, 이 장기 한계비용은 68.3 원/KWH('90년 52.94원/KWH, '91년 8월까지 55.5 원/KWH)로서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 요금인상이 필요.
 - 급격한 요금인상 부작용을 완화하는 동시에 저가격 수준에 기인하는 초과수요를 억제하여야 하지만 20% 수준의 대폭적인 요금인상이 주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92년중 요금인상 폭으로서 연평균 13~15% 수준을 추천.
- 계절별·부문별 요금의 배분에서 구조조정이 필요.
 - 요금의 배분은 형평성과 침투부하관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
 - 요금인상과 함께 부하관리형 요금구조 조정에 의해 최대부하 억제(91년 요금인상시는 연간으로 4.9% 상승에 불과하였지만 하계에는 인상폭이 14.6% 이었음).
 - 가정용 : 주택용 수용가의 누진구조 개선(누진단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되 누진율은 강화)
 - 상업용 : 업무용대수용가에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도입.
- 하계요금의 적용기간 단축(6~8월에서 7~8월)
 - 산업용 : 시간대 구분의 調整(침투부하시간대 단축).
- 92년 전력소비절약적 효과
 - KWH : 3.0%(단기 가격탄성치 0.20 적용 ; 실증분석자료에 의거)
 - 최대부하(kW) 절감효과는 4~5% 수준으로 예상.

나. 열병합 발전 보급 확대 정책

- 금융 및 세제지원은 기존제도의 활용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계통전력과 병역운전과 관련된 가격조건 및 잉여전력 판매여건의 개선이 요구됨.
- 가격제도 : 잉여전력 판매가격 및 계통전력 수전가격 조건 개선.
 - (1) 잉여전력 판매가격
 - 尖頭 負荷時 잉여전력 판매가격은 내연력 발전원가 수준으로 상향조정.
 - 계통전력 負荷 경감 기여도에 기준하여 회피설비 비용을 요금에 반영.
 - (2) 계통전력 受電時 가격 조건 개선
 - 受電電力을 특성에 따라 일반수요(상시 부족분)와 비상수요(고장정지 및 보수)로 구분.
 - 일반수요분에 대해서는 정상요금 적용.
 - 비상수요에 대해서는 특별요금 적용.
 - 보험 요율 산출방식에 의한 기본요금 산정(기본요금 부담 경감).
- 잉여전력 판매여건 : 일반전기사업자로 하여금 열병합 발전 잉여전력을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함.

2. 규제정책

가. 전력부문

○ 가정 · 상업부문

- 고효율 절전기기 선정기준 설정
- 품질검사 기준 설정 및 검사기관 선정
- 전자식 형광등 안정기 설치 의무화
- 에너지 효율개선 장려금 지급기준 설정

나. 수송부문

- 자가운전차량 10부제 운행 권장
 - 정부관련기관 시범적 우선 실시 요망.
- Car Pooling 제도
 - 자가용 승용차의 50% 이상이 1~2명의 탑승으로 휘발유 소비 효율적 측면에서 낭비요인이 있음.
 - 따라서 시간제로(예, 오전 7~10시, 오후 5시~8시) 구역을 지정하여 4명 이상 탑승시킨 승용차의 우선통행(예, 전용차선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동차의 과세기준을 현행 배기량기준 과세제도에서 배기량과 중량을 동시에 고려하는 기준으로 전환하여 과중량으로 인한 연료낭비 제거.
- 대도시 부심권의 지하철역 등지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대중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로 승용차의 도심 진입 제한.
- 다. 사무용 신축건물의 에너지 효율규제 기준 강화
- 日本의 경우 건축부문의 연간 열부하계수, 설비부문의 空

調 에너지소비계수 등 두가지 성능기준치로 규제.

- 설계도면을 통하여 해당건물의 위 두가지 계수를 계산해 낼 수 있는 에너지 解釋用 컴퓨터 프로그램이 보편화 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사용 제한조치외에는 규제가 없음.
 - 단열재 두께 및 열관류율 등 외벽 · 창 등을 통한 열손실 방지 조치에 대한 부위별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으나 권장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음.
 - 성능기준치로서 냉 · 난방 상한치가 건설부 고시에 제시되어 있으나, 권장사항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준치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약함.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경우 사전에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절약계획서의 평가 · 심사 및 사후처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 부위별 기준 및 권장 위주의 현행 규제기준을 보다 강화된 성능기준 및 의무사항으로 개정.
 - 또한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평가 · 심사 및 사후처리 규정의 보완 및 철저 실시.

라. 아파트 건물의 에너지효율 표시제도 도입

- 아파트 분양시 에너지, 특히 전력소비효율을 표시토록 하여 입주 희망자에게 에너지절약형 아파트의 구매심리 유도.
- 이 제도는 영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효율 등급제도 도입의 전단계로 간주될 수 있음.

3. 지원정책

가. 전력

○ 산업부문

- 금융지원정책 : 低利 내지 무담보용자 제공
 - 可變速 전동기 보급
 - ① 절전 잠재량 : 전동기용 에너지의 20%
 - ② '92년 목표 : 전동기중 5%를 가변속전동기로 교체보급, 582GWH(전체의 0.5%) 절감.
 - 전동기 시스템 개선
 - ① 절전 잠재량 : 전동기용 에너지의 20%
 - ② '92년 목표 : 전동기 시스템 1% 개선, 116GWH(전체의 0.1%) 절감.
 - 재원 :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전력회사
- 장려금 지급 정책
 - 해당수용가가 신청할 경우 효율개선 실천결과를 평가하여 장려금 지급.

○ 가정 · 상업부문

- 환급정책

- 백열등을 전구식 형광등으로 交替
 - ① 節電 잠재량 : 2,783GWH/년
 - ② '92년 목표 : 전체 백열등의 20%를 교체, 557 GWH(전체의 0.5%) 절감.
 - ③ 예산 : 520억원(가격의 50% 환급 가정)
 - ④ 재원 :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전력회사
- 전자식 형광등 안정기 설치
 - ① 절전 잠재량 : 2,282GWH/년
 - ② '92년 목표 : 전체 형광등안정기의 20%를 교체, 457GWH(전체의 0.4%) 절감.
 - ③ 예산 : 810억원(가격의 50% 환급 가정)
 - ④ 재원 :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전력회사
- 고효율 냉방기기 및 가전기기의 교체 내지 구입시 효율등급 및 구매가격에 따라 일정액을 환급

- 조세감면 정책

- 가정부문 :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甲勤稅 감면 조치.

- 금융지원정책

- 고효율기기 구매시 低利 내지 무담보용자 제공
- 재원 :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전력회사

- 장려금 지급정책

- 장려금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해당수용가가 신청할 경우 효율개선 실천 결과를 평가하여 장려금 지급.

나. 수송부문

○ 버스 공영제 도입

- 수도권에 버스공영제를 도입하여 수송체계의 최적화 도모.

○ 경승용차보급 확대를 위한 支援(세제감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등).

- 국내 경승용차의 보급비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
- 현재 국산 경승용차의 연비는 중소형승용차 연비의 절반정도로 보급이 확대될 경우 연료절약 효과는 지대함.

| | 한국 | 일본 | 이탈리아 | 프랑스 |
|-----------------|------|-----|------|-----|
| 1,000cc이하 차량보급율 | 0.8% | 26% | 50% | 36% |

- 2001년 승용차 보유대수중 경승용차 비중을 현재 日本 수준인 26%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승용차의 판매비중이 매년 38%를 유지해야함. 이경우 연간 휘발유 수요의 2.1% 절감효과가 예상됨.

다. 지역난방 보급확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의한 지역난방사업 활성화
- 쓰레기 소각 열병합 발전을 이용한 지역난방 확대
 - 대상지역 : 아파트 밀집지역중 기존의 熱併合源(예 ; 발전소)에 인접해 있지 않은 地域.

- 지원대책

-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부지확보 지원
- 금융·세계 지원 : 현행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지원제도를 활용하되 우선지원 대상으로 지정
- 생산된 전력의 직접판매 허용(일반 전기사업자에게 판매할 경우에 비해 약 2배의 판매수익 보장) 및 저렴한 예비전력공급(보수 또는 고장시)
-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액을 이용한 보조금 지급

○ 지역난방사업 추진체제 확립

- 일정수준의 열밀도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난방 타당성 조사 실시
- 타당성 조사결과 지역난방 적합지역으로 판정되면 지역난방사업지역으로 지정.
- 해당주민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난방 사업계획을 제출케 함.

- 사업계획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연료사용규제(도시가스 사용의무화)의 적용을 유예함.

라. 공공건물의 에너지관리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게 위탁

- 美國의 경우 에너지절약기업 도입시 에너지 절약시장 성장을 위하여 공공건물의 에너지관리를 에너지절약기업에게 위탁하도록 정부가 적극 권장

- 그결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은 보장된 절약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시현, 현재는 건물부문 뿐만아니라 산업부문 까지 사업영역을 확장중임.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게 건물의 에너지관리를 위탁할 경우 현행보다 20~30%의 에너지절약이 가능함.

-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도입단계임을 감안, 절약전문기업의 사업영역을 일정부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정부종합청사의 에너지관리를 기존 혹은 신생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게 위탁.

마. 既 개발된 에너지 절약기술의 실용화 중점지원

- IEA 보고서에 의하면 기 개발된 에너지 절약기술의 적용만으로도 20~30%의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 기금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支援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이 크지 않을 뿐만아니라, 기술개발과 실용화의 연계체계가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실용화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는 개발된 기술의 에너지 절약효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실용화를 위한 투자재원의 부족이 지적됨.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석유사업기금을 통해 실용화 자금을 대폭 지원토록 하되, 영국의 경우처럼 최초실용화 기업

에게 투자자금의 일정부분을 무상보조.

바. 아파트 세대별 열량계 및 온도조절장치 부착의 실효성 제고

- 현재 18평이상 아파트에 대해 세대별 열량계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세대별 난방비를 평형별로 일률부과하고 있어 전혀 실효성이 없음.
- 각 세대별 열소비량에 따라 난방비 부과를 실시토록 하여야 함.

4. 정보보급 및 홍보

가. 경제운전교육의 강화

- 교육대상의 확대 및 교육효과에 대한 홍보 실시
- 사고시 보험혜택 적용
- 운전면허 시험시 "경제운전" 항목 삽입
- 경제운전교육 강화 및 운전면허시험 개선의 효과: 휘발유 381천배럴/년 절감('92년 휘발유 수요의 1.2%)

나. 에너지절약 상설 홍보관 기능 활성화

- 현재 전국적으로 7개의 에너지절약 상설 홍보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서울 3곳, 부산, 춘천, 대전, 전주 각 1곳), 장소를 정부로부터 무료로 제공 받기 때문에 좋은 장소 확보가 곤란하고, 또한 예산상의 문제로 각 홍보관마다의 상담전문요원 배치가 곤란한 실정임.
-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해 최소한 전국 각도마다 한곳씩의 홍보관 설치운영, 각 홍보관마다 상담전문요원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
- 英國의 경우 *Milton Keynes*에 약 37만평의 부지를 확보, 이를 에너지공원 (*Energy Park*)이라 명명하고, 에너지효율적 주택건축 및 산업개발에 활용토록함.
 - 모든 주택은 현재의 건물규제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에 맞게 건축됨.
 - 현재 600여 가구 건축완료, 600여 가구 건축중임.
 - 그 결과 에너지공원 주민들의 에너지비용은 1/3~1/2 까지 감축됨. ♣

알아봅시다

유류분(遺留分)

특정 상속인에게 認定된 피상속인의 처분을 규제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비율액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

따라서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 처분할 수 없다.

로데오 거리

서울 압구정동 갤러리 백화점앞 거리를 지칭. 세계 제일의 변화가 美國 비버리 힐즈의 로데오 애비뉴를 따 서울의 「로데오 거리」로 명명됐다.

조롱목

넓던 길이 조롱박의 갈록한 부분처럼 좁아지는 곳을 일컫는 순우리말로 '병목' (*Bottle neck*)과 비교되는 말.

'92년 에너지 영향평가제 도입

동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이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를 '92년부터 실시키로 했는데, 이는 산업구조고도화와 소득향상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사용기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내용은 '92년부터 국가및 공공기관은 연간5천t 이상의 에너지(석유환산)나 2천만kw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신도시 공단, 고속전철 등을 건설할 때 사전에 반드시 동자부와 에너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으며, 에너지 사용기기의 효율향상을 위해 TV, 냉장고 등에 최저효율과 단계별 목표효율, 별표(☆)등을 사용한 에너지 효율 등급을 5단계로 표시, 사용자들이 선택해 쓸 수 있도록 했다.